

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운영세칙

(제정 2004. 10. 21.)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전통음식의 맛과 멋을 계승하고 연구·개발을 통해 전통음식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여 현대인의 입맛과 새로운 음식문화에 부합하는 외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궁중약고추장(이하 “궁중약고추장” 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1.>

제2조(위치) 궁중약고추장은 본교 농생명융합기술원 내에 둔다. <개정 2016.1.1.>

제3조(사업) 궁중약고추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궁중약고추장 제조 및 판매
2. 제품 개발을 위한 R&D
3. 한국 고유의 전통음식 개발
4.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
5. 그 밖에 궁중약고추장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제4조(문서관리) 궁중약고추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관리한다.

1. 궁중약고추장의 운영,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문서
2. 제품 제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
3. 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
4. 그 밖에 궁중약고추장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

[본조신설 2016.1.1.]

제5조(조직) ① 궁중약고추장에 단장을 두며, 단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궁중약고추장에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장은 농생명사업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③ 궁중약고추장에 제품생산팀, 구매관리팀, 판매관리팀, 영업팀 등을 두며,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.

④ 궁중약고추장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1.1.]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궁중약고추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궁중약고추장의 사업계획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6.6.>
2. 궁중약고추장의 현장실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위원회는 단장, 기획예산실장, 총무지원실장, 학사지원실장, 산학연구운영실장, 사무국장 및 참여학과 교수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12.1.>

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[본조신설 2016.1.1.]

제7조(재정 및 회계) ① 궁중약고추장의 재정은 판매수입금,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의 지원금, 본교의 지원금,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하며, 회계는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6.1.1.>

② 삭 제 <2018.6.6.>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.